익명카페 설득논리 및 대응방안 검토

1. 검토 배경

▣ **법관 인터넷 익명카페 '이판사판'의 개설자 홍○○ 판사(○○지법, 35기) 상대로 카페 운영방식 개선을 직접 권유할 예정 ⇨ 개인적 친분관계나 소속 법원장과의 관계 등에 의존한 인적·정서적 접근 내지 부담감만으로는 기존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 높지 않음**

▣ **1법관으로서 법리적인 논증과 판단을 중시할 수 있음 ⇨ 개설자 설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설득 논리를 추가 검토·제공할 필요 있음**

- 개설자는 위 카페에 '법관의 품위에 반하는 정도의 저급한 표현이나 게시물이 없다'고 인식하고 있고, 실제 그러한 측면도 있음 ⇨ 저급한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, 위 카페의 활동이 제한되고 운영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필요 및 당위에 대한 설득 논리가 필요함

▣ **2위와 같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소속 법원장의 권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최종 대응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 있음**

2. 설득 논리 검토

▣ **사법부 존립의 근거이자 기반 ⇨ 국민의 신뢰**

- 주권자로부터 선출되지 아니하여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, 판결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,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 법관에 대하여 불가침의 독립성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이유

- 정보화·다원화된 사회에서 기존의 권위가 해체되고,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의 비판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, 국민은 법원이 중심을 잡고 사회의 극심한 갈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소하며, 사회

질서를 유지하고 **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다하기를 기대**하고 있음

▣ **국민의 신뢰를 위한 법관의 책무 ⇨ 기본적 품위와 공정한 외관**

- 국민은, 단순한 법률기술자 내지 직업공무원이 아닌 **성숙하고 신중한 인격체로서 모두의 존경과 신뢰**를 받을 수 있는 법관을 희망함
- 재판업무는 물론 사회적 이슈, 개인생활 등에 대한 **법관들의 '민낯'이 (단어 하나하나까지) 그대로 국민에게 드러나는 경우**는 물론, 법관들 사이에 일종의 **'해방구'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알려지는 경우**에도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냉소,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

☑ 올 초 이판사판의 실제 게시글 중 **'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가 법원에 근무 중', '주변 부장님 심지어 단독 중에도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판사가 있다', '부장이 대놓고 봐줘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', '불가능한 결론이 나왔다'**는 표현의 댓글이 상당수 있었음

⇨ 현직 판사들이 위와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질 경우 국민은 **전관예우를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 법원의 모든 판결이 전관예우에 의해 결론이 조작된 것이라고 확신**을 갖게 될 것임.

- 이판사판 회원인 판사가 어떠한 의도로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는지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음

– 이로 인한 극도의 사법불신을 이판사판 운영진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. **동료·후배 법관들이 향후 수십 년간 최선을 다해 야근하고 재판한다고 해도 위 몇 마디가 공개됨으로 인한 불신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음**

☑ 최근 이판사판에서 논란이 된 '로스쿨 출신 신임법관과 연수원 출신 법관 사이의 이해대립과 갈등' 또는 '부장 및 배석간 갈등' 등의 이슈도 마찬가지임

⇨ **'부장판사가 기록은 전혀 보지 않으면서 사건처리 통계만 압박한다', '배석판사는 영혼 없는 판결작성기계에 불과하다'는 글을 읽은 국민이 법원의 재판을 도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**

- 이는 위와 같은 현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일부 현실이 부당한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

- 판사들끼리 **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고 공감함으로 인한 순기능보다 그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짐으로 인한 부작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**임

▣ **법관의 표현의 자유 ⇨ 법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한될 수밖에**

없음

- 헌법 제103조의 양심은 주관적·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객관적·법리적 양심임 ⇨ 법관은 온전한 법해석과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는 가장 천부적 기본권인 '양심의 자유'도 때로는 포기하여야 함 ⇨ 표현의 자유 역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제한을 피할 수 없음
- 선출되지 않은 법관의 독립성 보장은 고도의 자기 절제 및 공직윤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
- '익명 폐쇄 카페'라는 사정은 아무런 참작 요소가 될 수 없음 ⇨ 오히려 1'법관만 가입하는 카페'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**국민은 이판사판의 일부 인식, 의견, 성향, 품격을 법관 사회 전체의 인식, 의견, 성향, 품격으로 받아들일 것이 명백**하고, 2온라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**카페의 표현 하나하나가 그대로 외부, 특히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에 불과**함
- '표현의 자유 및 표현된 내용의 정당성'만을 내세우는 것은 책임 있는 법관으로서의 자세로 보기 어려움 ⇨ 그 표현이 국민을 상대로 작출해 낼 외관과 오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함

▣ 법률 선진국의 논의

- 우리나라 못지않게 법관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에서도 법관의 익명 인터넷 활동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음
- 영국의 Senior Presiding Judge for England and Wales(**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을 관할하는 항소법원장**격)가 2012년 제정한 '**법관을 위한 인터넷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규정**' ⇨ '익명으로 인터넷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, 그 **신상정보가 밝혀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**하다'는 이유를 들어 법관이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'법관임이 밝혀지면 법관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공

공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의사표현을 금지'하는 취지

- 위 규정에 위반되는 기존의 글을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도록 명시함

● 미국 연방대법원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자료집 및 미국 법무부의 행동지침 등에 의하더라도 익명 활동은 엄격한 규제 대상임

▣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

●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익명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⇨ 법관으로서 이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

☑ **2012. 5. 권고의견 제7호 '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'**

▶SNS에 게시한 정보는 **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널리 전파되어 계속 존속할 수 있으므로 공개적 성격**이 있음

▶법관은 SN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**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**해야 함. 자신의 신상정보와 게시물의 공개범위 설정 및 관리에 신중해야 함 ☞ 8개월 전인 2014. 11. 게시글 중 "**내 주심 아닐 때 나는 법정에서 메모지에 낙서하거나 딴 생각한다**", "내 주심 사건 기록 본다"는 내용 역시 유출되면 재판의 신뢰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임

▶법관은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품위를 유지하고, 법관으로서의 공정성 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, 편견 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

▶법관은 **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**해야 함

☞ "**원세훈 판결 1심 재판장의 승진을 보고 많은 판사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**", "**지원에서의 사무분담**시즌은 **미니정치판을 뛰어넘어 동물의 왕국 수준의 스펙타클함**을 보여주는 듯. 강한자가 살아남는건지 살아남는자가 강한건지"라는 등의 게시글은 국민의 입장에서 법원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, 크게 실망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사회적 논란이 명백히 예상됨

☑ **2015. 3. 권고의견 제10호 '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'**

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**공개대상이 제한된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**에도

▶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 ☞ 법관이 스스로를 **"아래것들", "판결쓰는 기계"**라고 표현
▶**재판의 내용에 대한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견표명도 하지 않는 것**이 바람직함
▶익명으로 올리는 글이라도 그것이 **어떤 경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**하여, 법관으로서의 **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**하여야 함 ☞ "**고위 법관들이 대법관 승진을 위해 여당, 야당 눈치를 보며 미담사례로 소개될 판결을 일부러 만들어** 내고 있다"는 게시글

▣ 이판사판 법관들의 사전적·자율적 개선의 기회

● 카페의 게시글이 **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(운영진의 생각과 달리) 매우 높음** ⇨ 자동로그인 상태에서 가족, 친지, 기자 등이 보는 경우(특히 가족 중에 기자가 있는 경우), 퇴직법관이 종전 내용을 저장하여 둔 경우, 가입자 수 증가하면서 일부 법관 스스로 공개할 가능성 등 더구나 **일부 기자는 위 카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음**,

- 예를 들어 퇴직한 법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'전관예우가 있다'는 카페글을 영업에 이용할 유혹을 느낄 수 있음

● 외부 **유출 후 카페를 폐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** ⇨ ①이미 **사법부에 대한 신뢰 및 동료법관의 자긍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**를 준 이후임 ②이판사판 카페의 회원들에게도 치명적인 죄책감과 상처를 남길 것임

● 법관으로서 **타율적인 문제제기와 공격이 있기 전에 스스로**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심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임

▣ 결론 (권유안)

● 법관들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 하거나 카페를 폐쇄하라는 것이 아님 ⇨ 게시글 **공개시 사법부와 동료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치명상을 줄 수 있음을 인정**하고, 그 **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**를 취하라는 것임

- 사법부 정책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라는 것도 아님

● 마우스를 이용한 **복사 및 붙여넣기 금지, 링크 생성 금지**(이른바 '펌'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)와 같이 다른 카페도 흔히 하고 있는 **기초적인 유출방지책 조차 전면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음**

● 근본적으로, 공개시 법원 및 법관에 대한 **신뢰에 아주 조금이라도 손상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글은 운영진이 삭제하는 책임감**이 필요함

- 개설자가 이 부분 권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나, 권유할 필요는 있음. 다만 압박으로 받아들여 반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

● 나아가 **일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익명 댓글을 없애고 실명 글쓰기만 가능하도록 하자는 논의**도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, 법관들이 반드시 '익명'이라는 가면을 쓰고 글을 써야만 자유롭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선입견도 재고할 필요가 있음

- 단 실명 카페로의 전환 권유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외압 논란의 여지 있어 신중할 필요 있음

●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법관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(예를 들어) 약 1주간 **자유롭게 논의한 후 적어도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함으로써 유출 위험을 최소화**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해야 함

- 글을 삭제하는 것에 비하여 운영진의 부담이 덜 하고, 논의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명분도 있음

- 비공개된 후에 꼭 필요한 법관은 운영진의 허가를 얻어 열람할 수 있을 것이므로, 논의가 사장되는 것도 아님

● 그 밖에 글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공개되어 나 자신과 동료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필요함

3. 운영진의 권유 거부 또는 불이행시 추가 대응 방안

▣ **개설자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커 바람직하지 아니함은 기검토와 같음**

▣ **이판사판 익명 게시판의 코트넷化 방안**

● 1행정처 **심의관, 각급 법원 기획법관**, 나아가 부장판사 이상 선배 법관 및 수석부장판사 등이 대거 **이판사판에 가입** ⇨ 한 두 명이 아니라 다수가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법관의 부담 적음

- 카페 운영진 '스스로 제한 없는 가입'의 원칙을 선언한 바 있어 가입 거부할 명분 없고, 실제 거부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어서 거부하기 어려움

- 실제로는 4~5명의 가입자만으로도 아래와 같은 효과 기대할 수 있음

● 2카페에서 사법정책 현안에 대한 오해, 선배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 등이 이루어질 경우 적극 나서서 설명 ⇨ **자신의 직무를 밝히고 해명하는 것도 적극** 검토

- ⇨ 가입법관들로서는 자신의 게시글이 사실상 공개된다는 부담감을 느껴 공격적이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글을 작성하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임

- ⇨ 결국에는 실명이 드러나는 코트넷과 비슷한 수준의 의견표명만이 이루어지거나 (코트넷에서도 공개글을 올리던) 일부 성향의 법관만이 민감한 글을 올리게 될 것임

● 3나아가 위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이후에는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게시글에 대하여도 비공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글 게시 ⇨ 익명 게시판 존재로 인한 사법부 피해 가능성 원천 봉쇄

● 4이판사판 카페의 동향 파악 등에 과도한 사법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됨